감 사 의 견 서

수협법 제73조에 의하여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함을 인정합니다.

2021년 2월

인천수산업협동조합

감 사 양 금 철 (양금철)

감 사 이 기 준 (이기준)

0721100065 SUHYUP 2021-01-27 11:07:15